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1년 제10차 이사회 회의조서

소집통보일		2021.10.19.(화)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8명	2명	10명	
불 참	1명	0명	1명	

1. 일 시 : 2021.10.28.(목) 14:00 ~ 18:00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김이수, 이사 임동윤, 이사 김무영, 이사 변원섭, 이사 백란, 이사 정병준, 이사 이문수, 이사 조은정 (이상 8명)

- 감사 : 감사 박태성, 감사 김채인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이사 : 이사 신윤숙 (이상 1명)

4. 심의·의결 안건

- (1) 조선대학교병원 2021년도 임·단협 잠정합의 승인(안)
- (2)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개정(안)
- (3) 조선대학교병원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4) 조선대학교병원 로봇수술실 증축 공사(안)
- (5)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의 건
- (6)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7)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안)
- (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9)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 (10)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
- (11)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제 규정 개정(안)
- (12)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개정(안)
- (1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14)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5. 보고사항

- (1) 조선대학교 신임 보직자 업무수행계획서 및 부서운영계획서 보고
- (2) 조선대학교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신청 경과 및 탈락 사유 보고
- (3)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안 보고
- (4) 조선간호대학교-조선이공대학교 통합 추진 경과 보고
- (5)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



【결 의 사 항】

1. 조선대학교병원 2021년도 임·단협 잠정합의 승인(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대학교병원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302,270,641천원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대학교병원 로봇수술실 증축 공사(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로봇수술실 증축 공사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의 건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중 7명 찬성(김이수 이사장, 임동윤 이사, 김무영 이사, 변원섭 이사, 백란 이사, 정병준 이사, 조은정 이사), 1명 반대(이문수 이사)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7.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2,722,101천원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임동윤 이사, 조은정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1. 10. 28.

이	사	장	김 이 수	김이수
이		사	임 동 윤	임동윤
이		사	김 무 영	김무영
이		사	변 원 섭	변원섭
이		사	백 란	백란
이		사	정 병 준	정병준
이		사	이 문 수	이문수
이		사	조 은 정	조은정
감		사	박 태 성	박태성
감		사	김 채 인	김채인

■ 제2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산구조문 대비표

□ 직원 보수 규정

현 행	개 정
제4조(직원의 봉급)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직원의 봉급) ----- [별표 2] -----.
제24조의2(진료연구보조비) ①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원에게는 [별표 11-1]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의2(진료연구보조비) ①----- ----- [별표 11-1]----- -----. ② ~ ③ (현행과 동일)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현 행

[별표 2] 직원봉급표

(월 지급액 단위: 원)

종별	일반기술직				관리 운영직	일반기술직관리운영직				고용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종	고용
1	3,674,300	3,314,900	2,941,100	2,538,900	2,253,400	2,094,500	1,879,600	1,675,800	1,492,800	1,329,000	1,164,000
2	3,810,600	3,437,600	2,957,200	2,641,600	2,353,800	2,191,900	1,965,200	1,757,200	1,565,400	1,397,000	1,190,000
3	3,946,700	3,563,900	3,075,100	2,748,100	2,457,300	2,292,500	2,056,100	1,843,100	1,631,100	1,465,200	1,191,800
4	4,082,200	3,691,100	3,195,700	2,859,800	2,563,100	2,395,200	2,151,500	1,930,700	1,715,800	1,552,600	1,258,800
5	4,228,500	3,820,400	3,318,100	2,972,300	2,671,9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1,599,400	1,296,100
6	4,371,100	3,951,000	3,441,500	3,088,200	2,780,6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1,674,000	1,270,800
7	4,514,500	4,089,000	3,566,200	3,205,900	2,889,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1,747,500	1,306,000
8	4,657,800	4,215,500	3,691,400	3,325,100	2,999,3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1,821,600	1,337,000
9	4,802,000	4,349,100	3,817,100	3,444,600	3,109,700	2,937,700	2,663,400	2,394,600	2,153,500	1,895,100	1,388,500
10	4,946,100	4,482,600	3,942,500	3,565,000	3,220,3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1,968,700	1,395,600
11	5,091,000	4,616,200	4,069,200	3,677,400	3,333,9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2,016,900	1,422,600
12	5,240,700	4,754,800	4,188,300	3,785,900	3,424,3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2,065,300	1,446,000
13	5,391,400	4,893,600	4,299,800	3,888,900	3,519,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2,113,600	1,467,000
14	5,527,700	5,033,200	4,403,800	3,984,900	3,610,3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2,161,800	1,487,000
15	5,653,600	5,113,300	4,501,700	4,075,600	3,695,9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2,219,600	1,505,500
16	5,768,800	5,215,100	4,594,000	4,160,900	3,776,8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2,243,600	
17	5,874,900	5,311,600	4,679,900	4,241,200	3,853,6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2,276,200	
18	5,971,800	5,400,300	4,759,900	4,317,000	3,925,8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2,309,800	
19	6,061,500	5,482,400	4,834,800	4,388,400	3,993,7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2,343,000	
20	6,143,200	5,559,300	4,904,700	4,455,300	4,058,9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2,375,400	
21	6,227,900	5,630,400	4,970,100	4,518,300	4,120,0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2,404,500	
22	6,286,500	5,696,400	5,032,400	4,577,400	4,176,9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2,434,000	
23	6,349,200	5,757,200	5,088,900	4,633,300	4,231,2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2,462,300	
24	6,400,500	5,814,000	5,143,100	4,685,400	4,282,8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2,491,500	
25	6,449,900	5,869,700	5,192,700	4,734,800	4,331,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2,520,500	
26		5,905,200	5,234,700	4,781,200	4,377,2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536,200	
27		5,946,500	5,273,500	4,819,800	4,415,7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552,200	
28			5,310,500	4,856,600	4,452,6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567,400	
29				4,890,800	4,486,5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2,582,600	
30				4,925,900	4,519,6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2,598,4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별표 11-1] 진료연구보조비

(단위 : 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비고
교 수	2,408,000	임상교원
부교수	1,887,900	
조교수	1,536,200	

개 정

[별표 2] 직원봉급표<2021.3.1부터 적용>

(월 지급액 단위: 원)

종별	일반기술직				관리 운영직	일반기술직관리운영직				고용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종	고용
1	3,711,600	3,348,600	2,970,000	2,564,700	2,276,900	2,115,800	1,896,700	1,692,800	1,493,500	1,329,000	1,175,800
2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377,700	2,214,200	1,995,300	1,775,100	1,602,300	1,411,200	1,191,900
3	3,988,800	3,601,100	3,106,300	2,776,000	2,482,300	2,315,800	2,077,000	1,861,800	1,700,400	1,480,000	1,238,800
4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589,100	2,419,900	2,173,400	1,950,300	1,773,600	1,548,100	1,218,000
5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699,0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1,615,600	1,248,600
6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808,9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1,690,900	1,283,600
7	4,560,400	4,124,500	3,602,400	3,236,500	2,919,3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1,765,200	1,319,200
8	4,705,100	4,258,300	3,738,900	3,358,900	3,029,800	2,856,700	2,581,300	2,332,100	2,096,400	1,840,100	1,350,600
9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3,141,300	2,967,500	2,690,400	2,408,800	2,175,400	1,914,300	1,382,400
1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253,0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988,700	1,409,700
11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357,7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2,037,300	1,437,000
12	5,289,900	4,803,100	4,230,900	3,824,400	3,459,1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2,086,300	1,460,700
13	5,446,200	4,933,200	4,343,900	3,928,400	3,555,7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2,135,000	1,481,900
14	5,59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647,0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2,183,700	1,502,100
15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733,5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2,233,000	1,520,800
16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815,200	3,599,100	3,259,100	2,928,300	2,658,500	2,266,300	
17	5,94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892,8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2,299,200	
18	6,06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965,7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2,333,200	
19	6,123,100	5,598,100	4,893,900	4,433,000	4,034,3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366,700	
2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4,100,1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399,500	
21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4,161,9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428,900	
22	6,350,400	5,751,300	5,082,500	4,623,900	4,219,300	3,994,800	3,623,300	3,264,600	2,982,000	2,459,700	
23	6,413,700	5,815,700	5,140,800	4,684,400	4,274,2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87,3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326,3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16,800	
25	6,515,000	5,930,200	5,245,500	4,782,300	4,375,8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546,1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421,7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561,9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460,6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578,100	
28			5,364,500	4,906,100	4,497,8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593,400	
29				4,940,500	4,532,1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2,608,800	
30				4,973,900	4,565,5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2,624,7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별표 11-1] 진료연구보조비<2021.3.1부터 적용>

(단위 : 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비고
교 수	2,429,700	임상교원
부교수	1,904,900	
조교수	1,550,000	

□ 전공의 보수 규정

현 행

개 정

제7조(보수월액) 전공의 보수월액은 봉급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하되 통상임금은 봉급으로 본다.

제7조(보수월액) -----
----- [별표 1]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공의 보수월액

(단위: 원, 십원미만 절사)

전공의	봉급	전공의 수당		합계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 산정)	야간수당 (주21시간 산정)		
인턴	2021.1	1,822,500	2,275,920	398,280	4,496,700
	2021.3	1,826,200	2,280,610	399,100	4,539,960
레지던트 1년차	2021.1	1,836,100	2,292,880	401,250	4,530,230
	2021.3	1,840,000	2,297,840	402,120	4,539,960
레지던트 2년차	1,895,000	2,366,480	414,130	4,675,610	
레지던트 3년차	1,952,000	2,437,740	426,600	4,816,340	
레지던트 4년차	2,010,100	2,510,290	439,300	4,959,690	

※ 전공의 보수월액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2021.1은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하며, 2021.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공의 보수월액

(단위: 원, 십원미만 절사)

전공의	봉급	전공의 수당		합계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 산정)	야간수당 (주21시간 산정)		
인턴	2021.3	1,842,600	2,300,970	402,670	4,546,240
	2022.1	1,914,500	2,390,760	418,380	4,723,640
레지던트 1년차	2021.3	1,856,500	2,318,200	405,680	4,580,380
	2022.1	1,928,700	2,408,500	421,480	4,758,680
레지던트 2년차	2021.3	1,912,000	2,387,620	417,830	4,717,450
	2022.1	1,936,600	2,418,420	423,220	4,778,240
레지던트 3년차	1,969,500	2,459,400	430,390	4,859,290	
레지던트 4년차	2,028,100	2,532,480	443,180	5,003,760	

※ 전공의 보수월액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2021.3은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22.1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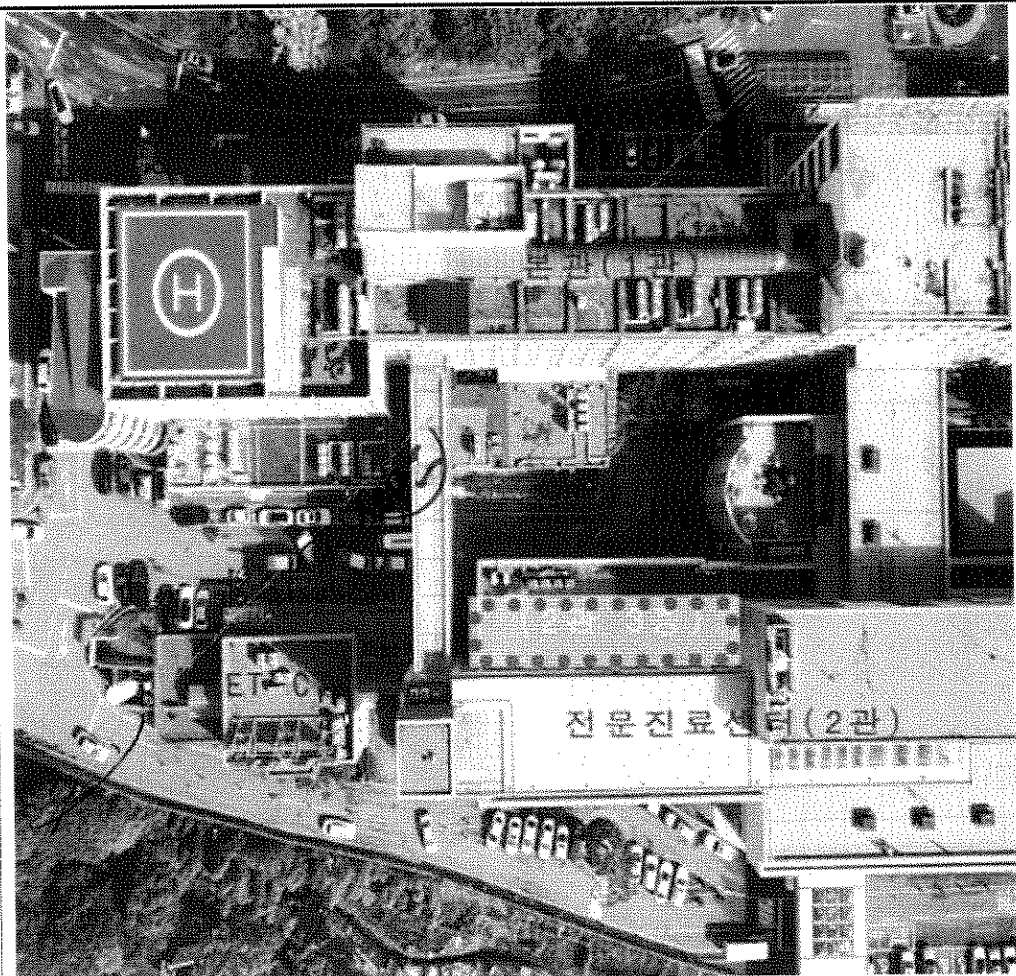
■ 제4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병원 로봇수술실 증축 공사 계획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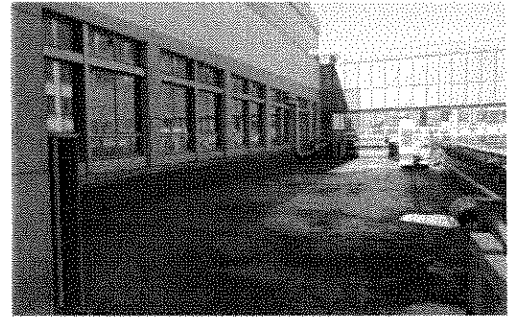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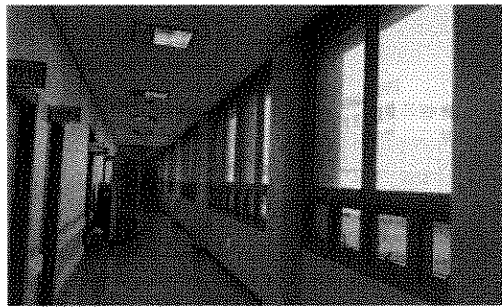
공사명	조선대학교병원 2관 3층 수술부속실 증축 공사(안)
설계개요	* 위치 및 구조 2관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 *면적 : 약 72평 - 수술부속실 : 약 72평(3층 : 약 243m ²) * 증축공사, 전기설비, 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기타 등
지번	* 학동 539번 일대
예상 소요기간	* 설계/공사기간 : 180일
추정예산	* 사업비 예산 : 778백만원

□ 사진대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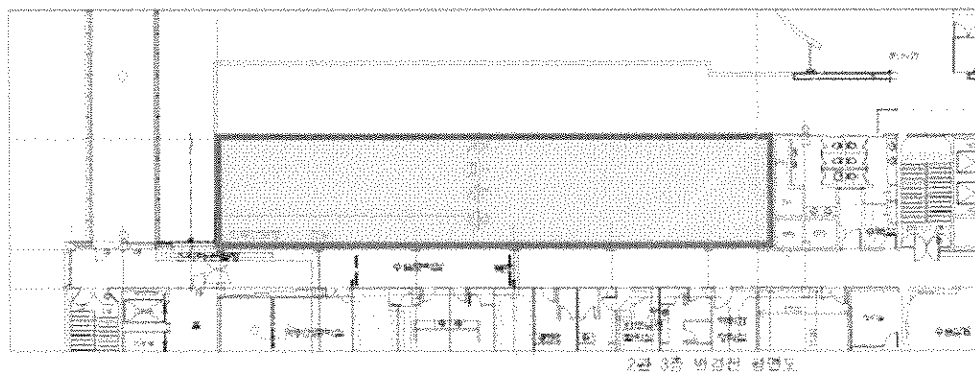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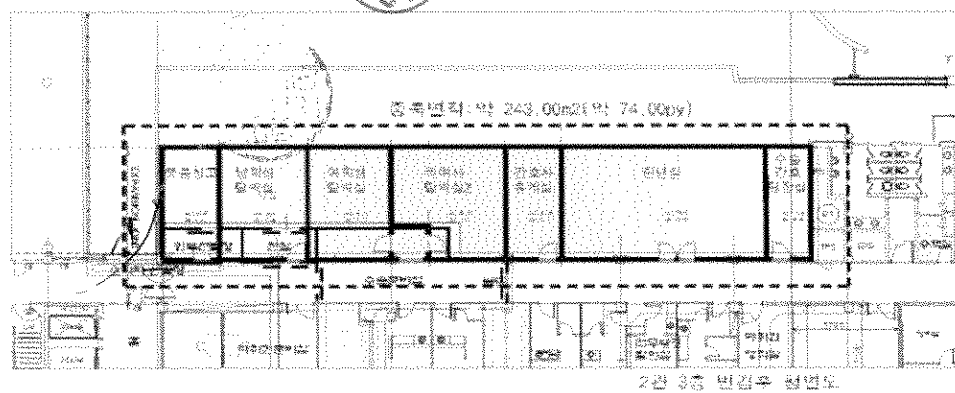


□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 제5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교원 보직 임명 동의 내역

보직 내용	면		임		비고
	소속/직위/성명	일자	소속/직위/성명	기간	
대외협력처장	법사회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봉철	2021.10.24.	법사회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봉철	2021.10.28. ~ 2023.10.27.	
취업학생처장	미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윤오남	2021.10.24.	미술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윤오남	2021.10.28. ~ 2023.10.27.	

■ 제6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

□ 면직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정년/ 비정년	퇴직일	퇴직사유
1	자연과학·공공보 건안전대학	작업치료학과	외국인 부교수	이안나	비정년 (외국인)	2021.10.31.	의원면직

□ 직위해제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2021.9.30. 광주지방법원 유죄선고 내역	직위해제 기간 등
1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이동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정관 제4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21.12.27.~법원 최종판 결 시까지 직위해제
2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교수	김진우	벌금800만원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2.1.1.~2.28.까지 직위 해제(학과운영 및 발전계획서 과제 부여)
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박청우	벌금800만원	
4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김재열	벌금700만원	
5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김경석	벌금500만원	
6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교수	김지훈	벌금500만원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2.1.1.~1.31.까지 직위 해제(학과운영 및 발전계획서 과제 부여)
7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교수	박설현	벌금500만원	
8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조창현	벌금500만원	
9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유영태	벌금300만원	

■ 제7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

연번	대학(원)	학부(과)	채용분야	채용구분	계열구분	채용계열	채용인원
1	IT융합대학	인공지능공학과	인공지능	공채	정년	공학	1
2	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지능신호처리	공채	정년	공학	1
3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데이터베이스/그래픽스	공채	정년	공학	1
4	경상대학	경제학과	국제경제학	공채	비정년 (강의전담)	사회	1
5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력공학	공채	정년	공학	1
6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수리학 및 수자원공학	공채	정년	공학	1
7	글로벌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어문화학전공)	중국어회화	특채	비정년 (외국인)	인문	1
8	글로벌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서양근현대사	공채	정년	인문	1
9	글로벌 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문화학전공)	독일어교육	특채	비정년 (외국인)	인문	1
10	미술체육대학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공채	비정년 (강의전담)	예체능	1
11	법사회대학	군사학과	군사전략 및 국방정책	특채	정년	사회	1
12	법사회대학	신문방송학과	디지털미디어론/ 산업	공채	정년	사회	1
13	법사회대학	행정복지학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공채	비정년 (강의전담)	사회	1
14	약학대학	약학과	산업약학	공채	정년	약학	1
15	의과대학	의학과	의약학일반외과학소화 기외과(대장항문)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16	의과대학	의학과	인지행동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17	의과대학	의학과	신경학 (뇌졸중학)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18	의과대학	의학과	소아신경학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19	의과대학	의학과	류마티스내과학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20	의과대학	의학과	감염내과학	특채	정년	의학임상	1
21	자연과학·공공 보건안전대학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일반	공채	비정년 (강의전담)	이학	1
22	치과대학	치의예과	예방치학	공채	정년	치의학기초	1

■ 제8호 의안 별첨 자료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9조(하부조직) ① ~ ⑫ (생 략) ⑬ <u>교육혁신원장은 부총장이 겸직하며, 대학 연구윤리원장은 교수·부교수로, 기획조정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학생처장, 입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총무관리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교수·부교수로 각각 보한다.</u>	제89조(하부조직)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u>교육혁신원장, 대학연구윤리원장은 교수·부교수로, -----</u> ----- ----- ----- ----- ---
제95조의3(치과병원) ① ~ ⑤ (생 략) ⑥ 총무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⑦ (생 략)	제95조의3(치과병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팀----- -----, ⑦ (현행과 같음)
제110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와 병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 1 내지 별표 3</u>과 같다.	제110조(정원) ----- ----- <u>별표 1 내지 별표 3</u>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별표2> 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별표2> 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단위 : 명)			(단위 : 명)			
병원·의료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의료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직렬·직종·직급별			직렬·직종·직급별			
일반직	2급	-	일반직	2급	-	
	3급	1		3급	1	
	4급	2		4급	2	
	5급	2		5급	2	
	6급	4		6급	4	
	7급	4		7급	4	
	8급	3		8급	3	
	9급	1		9급	1	
소 계		17	소 계		17	
의료직	임상전문교수(별정직2급상당)	2	의료직	임상전문교수(별정직2급상당)	3	
	임상전문교수(별정직3급상당)	3		임상전문교수(별정직3급상당)	7	
	전임의(별정직4급상당)	10		전임의(별정직4급상당)	10	
	전공의(별정직 5급상당)	100		전공의(별정직 5급상당)	95	
소 계		115	소 계		115	
연구직	임상심리사(별정직 5·6·7급상당)	-	연구직	임상심리사(별정직 5·6·7급상당)	-	
	의학물리사(별정직 5·6·7급상당)	-		의학물리사(별정직 5·6·7급상당)	-	
	심리수련생(별정직 7·8·9급상당)	-		심리수련생(별정직 7·8·9급상당)	-	
	임상연구원(별정직 7·8·9급상당)	-		임상연구원(별정직 7·8·9급상당)	-	
소 계		0	소 계		0	
기술직	약사	3급	-	약사	3급	-
		4급	-		4급	-
		5급	-		5급	-
		6급	1		6급	1
		7급	1		7급	1
	소 계		2	소 계		2
	간호직	2급	-	간호직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5급	1		5급	1
		6급	1		6급	1
		7급	1		7급	1
		8급	1		8급	1
		9급	-		9급	-
	소 계		4	소 계		4
	보건	3급	-	보건	3급	-
		4급	2		4급	2
		5급	2		5급	2

현 행

개 정

(단위 : 명)

병원·의료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직렬·직종·직급별		
직	6급	6
	7급	8
	8급	5
	9급	1
	소 계	24
의공·시설·환경	4급	-
	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소 계	5
소 계		35
관리 운영직	5급	-
	6급	2
	7급	6
	8급	4
	9급	2
	소 계	14
고용직	1종고용직	-
	고용직	-
소 계		0
총 계		181

※ 별표 2 해당부분(조선대학교치과병원)만 발취

(단위 : 명)

병원·의료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직렬·직종·직급별		
직	6급	6
	7급	8
	8급	5
	9급	1
	소 계	24
의공·시설·환경	4급	-
	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소 계	5
소 계		35
관리 운영직	5급	-
	6급	2
	7급	6
	8급	4
	9급	2
	소 계	14
고용직	1종고용직	-
	고용직	-
소 계		0
총 계		181

※ 별표 2 해당부분(조선대학교치과병원)만 발취

■ 제9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의2(교육혁신원) ①교육혁신원에 <u>원장, 부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총장이 겸하며, 부원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비교과통합관리센터장은 교수나 부교수로 보한다.</u> ② ~ ③ (생략)	제5조의2(교육혁신원) ①----- <u>원장, 부원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비교과통합관리센터장을 두고 -----</u> ② ~ ③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 10. 28

■ 제10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보직자 직책수행 판공비의 지급 기준)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보직자 직책수행 판공비의 지급 기준) - -----<별표 1>----- -----.
제4조(관리업무수당의 지급 기준) 관리업무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관리업무수당의 지급 기준) ----- -----<별표 2>-----.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혁신원 부원장의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적용시기) <별표 1>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기준표와 <별표 2>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구분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				
<별표 1>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기준표					<별표 1>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기준표				
유형	보 직 명	연간 총액	월지 금액		유형	보 직 명	연간 총액	월지 금액	
1	총 장	26,148,000	2,179,000		1	총 장	26,148,000	2,179,000	
2	부총장, 대학원장	13,440,000	1,120,000		2	부총장, 대학원장	13,440,000	1,120,000	
3	교수평의회 의장	9,360,000	780,000		3	교수평의회 의장	9,360,000	780,000	
4	처(실)장	7,200,000	600,000		4	처(실)장, <u>교육혁신원장</u>	7,200,000	600,000	
5	학장, 특수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 부속기관장(가), 특별사업기구 사업단(센터)장(가)	5,760,000	480,000		5	학장, 특수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 부속기관장(가), 특별사업기구 사업단(센터)장(가)	5,760,000	480,000	
6	본부장, 부처(실)장, 중앙도서관 부관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교 수평의회 사무처장, 평생교육 원장, 부속기관장(나)	4,512,000	376,000		6	본부장, 부처(실)장, 중앙도서관 부관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교 수평의회 사무처장, 평생교육 원장, 부속기관장(나), <u>창업지원 단장, 교육혁신원 부원장</u>	4,512,000	376,000	
7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u>창업지 원단장</u> , 특별사업기구 부(센터) 단장	3,972,000	331,000		7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창업지 원단장, 특별사업기구 부(센터) 단장	3,972,000	331,000	
8	팀장, 비서실장, 학부장, 학과 장(전공주임), 대학원학과(전공) 주임, 전문대학원 각 부장, <u>특 별사업기구 사업단(센터)장(나)</u> , 특별사업기구 각 부장, 행정본 부 및 단과대학 산하 센터장 (나)	3,648,000	304,000		8	팀장, 비서실장, 학부장, 학과 장(전공주임), 대학원학과(전공) 주임, 전문대학원 각 부장, <u>특 별사업기구 사업단(센터)장(나)</u> , 특별사업기구 각 부장, 행정본 부 및 단과대학 산하 센터장 (나)	3,648,000	304,000	
9	미술관학예연구실장, 박물관학 예연구실장, 기초교육대학 생 활영어 대표교수, 기초교육대 학 ESL 대표교수, 언어교육원 학당장 및 분원장, 부속기관장 (다)	3,216,000	268,000		9	미술관학예연구실장, 박물관학 예연구실장, 기초교육대학 생 활영어 대표교수, 기초교육대 학 ESL 대표교수, 언어교육원 학당장 및 분원장, 부속기관장 (다)	3,216,000	268,000	
10	산학협력단 각 센터장 등(다)	1,872,000	156,000		10	산학협력단 각 센터장 등(다)	1,872,000	156,000	

현행			개정		
<별표 2>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구분표			<별표 2>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교원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처(실)장, 부처(실) 장, 정보전산원장, 부학장, 대학 원 부원장, 언어교육원장, 산학 협력단 단장 및 부단장, 체육실 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LINC+ 사업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대학 연구윤리원장	봉급액의 4.5% (연봉제 적용 교 원은 당해 호봉 본봉액의 4.5%)	교원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처(실)장, 부처(실) 장, 정보전산원장, 부학장, 대학 원 부원장, 언어교육원장, 산학 협력단 단장 및 부단장, 체육실 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LINC+ 사업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대학 연구윤리원장, 교육혁신원장, 교 육혁신원 부원장	봉급액의 4.5% (연봉제 적용 교 원은 당해 호봉 본봉액의 4.5%)

제11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제 규정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조직 및 정원) ① 병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조직 및 정원) ① ----- '별표 1' -----.
제9조(총무부) ① (생략) ② 총무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9조(총무부) ① (생략) ② ----- 기획팀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병원의 조직도	<별표 1> 병원의 조직도
병원 기구 조직표	병원 기구 조직표

■ 제12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산구조문 대비표

□ 직원 보수 규정

현 행	개 정
제4조(직원의 봉급)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과 '별표 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직원의 봉급) ----- -- '별표 2'----- -----,
제24조의2(진료연구보조비) ①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원에게는 '별표 11-1'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의2(진료연구보조비) ①----- ----- '별표 11-1'----- -----, ② ~ ③ (현행과 동일)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직원의 봉급)의 <별표 2> 및 제24조의2(진료연구보조비)의 <별표 11-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현 행

<별표 2> 직원봉급표

(월 지급액 단위: 원)

직종	일반기술직				일반기술직관리운영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674,300	3,314,900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2	3,810,600	3,437,600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3	3,948,700	3,563,900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4	4,088,200	3,691,100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5	4,229,500	3,820,400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6	4,371,100	3,951,000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7	4,514,500	4,083,000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8	4,657,800	4,215,500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9	4,802,000	4,349,100	3,817,100	3,444,600	2,937,700	2,653,400	2,384,600	2,153,500
10	4,946,100	4,482,60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11	5,091,000	4,616,200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12	5,240,700	4,754,800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13	5,391,400	4,883,600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14	5,527,700	5,003,200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15	5,653,600	5,113,300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16	5,768,800	5,216,100	4,594,000	4,160,9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17	5,874,900	5,311,600	4,679,900	4,241,2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18	5,971,800	5,400,300	4,759,900	4,317,0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19	6,061,500	5,482,400	4,834,800	4,388,4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20	6,143,200	5,559,300	4,904,700	4,455,3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21	6,217,900	5,630,400	4,970,100	4,518,3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22	6,286,500	5,696,400	5,031,400	4,577,4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23	6,349,200	5,757,200	5,088,900	4,633,3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24	6,400,500	5,814,000	5,143,100	4,685,4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25	6,449,500	5,860,700	5,192,700	4,734,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26		5,905,200	5,234,700	4,781,3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7		5,946,500	5,273,500	4,819,8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8			5,310,500	4,856,8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9				4,890,8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30				4,923,9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별표 11-1> 진료연구보조비

(단위: 원)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교 수	2,408,000	임상교원
부교수	1,887,900	
조교수	1,536,200	

개 정

<별표 2> 직원봉급표

(월 지급액 단위: 원)

직종	일반기술직				일반기술직관리운영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711,600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3,988,800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4,560,400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4,705,100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5,293,900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5,446,200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5,58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5,93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6,03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6,123,100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6,350,400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6,413,700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6,515,000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별표 11-1> 진료연구보조비

(단위: 원)

지급대상	월지금액	비고
교 수	2,429,700	임상교원
부교수	1,904,900	
조교수	1,550,000	

□ 전공의 보수 규정

현행	개정																														
제7조(봉급) 전공의의 봉급은 수련과정별로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봉급) ----- '별표 1'-----.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봉급)의 <별표 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전공의 보수월액	<별표 1> 전공의 보수월액																														
(단위 : 원)	(단위 : 원)																														
<table><tr><th>지급대상</th><th>봉급</th><th>비고</th></tr><tr><td>인턴</td><td>2,538,900</td><td></td></tr><tr><td>레지던트 1년차</td><td>2,641,600</td><td></td></tr><tr><td>레지던트 2년차</td><td>2,748,100</td><td></td></tr><tr><td>레지던트 3년차</td><td>2,858,800</td><td></td></tr></table>	지급대상	봉급	비고	인턴	2,538,900		레지던트 1년차	2,641,600		레지던트 2년차	2,748,100		레지던트 3년차	2,858,800		<table><tr><th>지급대상</th><th>봉급</th><th>비고</th></tr><tr><td>인턴</td><td>2,564,700</td><td></td></tr><tr><td>레지던트 1년차</td><td>2,668,400</td><td></td></tr><tr><td>레지던트 2년차</td><td>2,776,000</td><td></td></tr><tr><td>레지던트 3년차</td><td>2,887,800</td><td></td></tr></table>	지급대상	봉급	비고	인턴	2,564,700		레지던트 1년차	2,668,400		레지던트 2년차	2,776,000		레지던트 3년차	2,887,800	
지급대상	봉급	비고																													
인턴	2,538,900																														
레지던트 1년차	2,641,600																														
레지던트 2년차	2,748,100																														
레지던트 3년차	2,858,800																														
지급대상	봉급	비고																													
인턴	2,564,700																														
레지던트 1년차	2,668,400																														
레지던트 2년차	2,776,000																														
레지던트 3년차	2,887,800																														

■ 보고사항 5 별첨 자료 : 산하학교 교원 임용 내역

□ 조선대학교

○ 휴직

연번	대학	학과	직위	성명	휴직기간	비 고
1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외국인조교수	다니엘코클란	2021.10.11.~ 2021.12.31.	질병휴직

□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 기간제교사 채용

연번	성명	자격종별	표시과목	발급연월일	담당과목	사유	임용기간
1	이세라	중등2정	도덕윤리	2017.2.24.	도덕	연가대체	2021.10.9.~ 2021.11.2.
도덕 정규교사 박경선의 병가 이후 연가에 따른 대체 기간제 연장							





